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96
----------	-------

발의연월일 : 2025. 12. 10.

발 의 자 : 채현일 · 장철민 · 문진석
한병도 · 양부남 · 정준호
김 현 · 신정훈 · 강득구
이상식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신고 계좌 등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 등 불법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적발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조치 등이 되더라도 미신고된 정치자금 계좌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일부 정당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일이 발생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조치되는 사례가 있었음. 해당 정당은 경찰로부터 수사받는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정당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정치자금을 사용하고 있으나 정치자금 계좌를 중지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위법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 정치자금 사용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미신고된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의 모금 및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지급정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정치자금의 불법 수입·지출”이라 한다)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치자금의 불법 수입·지출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치자금의 불법 수입·지출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불법 수입·지출 방지 등을 위하여 지급정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계좌의 명의인과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대상, 요건, 절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2조의2(지급정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정치자금의 불법 수입·지출”이라 한다)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치자금의 불법 수입·지출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치자금의 불법 수입·지출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불법 수입·지출 방지 등을 위하여 지급정지를 계속할 필요</u>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계좌의 명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대상, 요건, 절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